



법적 별거에 대한 양론성

정확한 별거 날짜는 이혼의 필수사항

자녀방문권을 법으로 제재하는 유일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아 오히려 부모와의 접촉이 자녀의 안전에 해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다.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발생한 수입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며, 별거 이후에 발생한 개인의 수입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별거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 하는 것을 책정하는 것은 이혼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이혼 상담전화 중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집을 나가 판사님을 차려서 별거한 지 몇 달이 됐으니 이제 이혼

신청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다. 참으로 간단한 질문인 듯하나, 이 질문은 이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법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에 Yes 혹은 No로 답변할 수 없다. 정확한 법의 인식 없이 쉽사리 사용한 법적 용어가 개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것이 곧 가정법에서 말하는 '별거'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혼인 기간 동안에 취득 혹은 발생한 수입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며, 별거 이후에 발생한 개인의 수입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별거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 하는 것을 책정하는 것은 이혼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며, 때로는 별거 날짜 하나를 놓고 밀고 당기는 재판할 수일에 걸쳐 하는 예도 있다.

법이 말하는 별거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의뢰인에게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실제 이혼 판례 얘기를 들려준다. Dr. B는 안과 의사로서 아내와의 사이에 딸 둘이 있었다. 그는 그의 병원에서 일하던 젊은 간호사와 아파트를 얻어 판사님을 차리고 집을 떠났다. Mrs. B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Dr. B는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입방아가 두러워 이혼만큼은 과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이쪽저쪽 눈치 보는 생활을 지속했다. 이미 젊은 연인이 있었는지라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부인과의 성관계는 끊어졌으나, Dr. B는 저녁 식사만큼은 집에 와서 부인과 자녀와 같은 식탁에 앉아 먹고 연인이 있는 아파트로 돌아가곤 했다.

그는 부인과 딸들을 데리고 휴일이면 여행도 다녔고, 생일과 결혼기념일에는 'I love you' 카드와 함께 꽃다발을 부인에게 안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동창회, 의사협회,



글·신혜원(가정법 전문 변호사)

학술회에 따른 각종 연회 자리에는 반드시 부인을 동반해 동료 사이에서 그의 체면과 명성을 지키느라 애썼다. 그는 또한 자신의 빨랫감을 정기적으로 집으로 가져왔고, 부인은 이를 마다 않고 빨아서 다려 주었다.

이러기를 4년, 드디어 Dr. B는 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별거 날짜가 언제나라는 치열한 법적 공방에 부딪혔다. 그는 당연히 자신이 4년 전 집을 떠나 연인과 판사님을 차린

때가 별거일이라 주장했고, 부인은 그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때가 별거일이라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 조항에 근거하여, 별거일이란 "Complete and final break in the marital relationship"이 발생하여 도저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와 그에 대한 가능성이 결여된 시기를 말하며, 단순히 집을 떠나 연인과 동거하는 그 자체가 별거 시기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판단, Dr. B의 경우 그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시기가 별거일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그의 수입을 부인과의 공동재산으로 판결 내렸다.

Dr. B의 이혼 판례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담고 있다. Dr. B는 지상의 낙원과 같은 생활을 즐겼으며, 부인과 젊은 연인 사이에서 그들이 각각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

부인은 가정 부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Dr. B가 의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내조했다. Dr. B는 일부 다처제의 생활 방식을 즐겼으니 그에 대한 재정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부인은 지난 4년간의 Dr. B 수입의 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

우리 한인 이혼의 경우에도 우리의 기존 가족관, 결혼관, 또 부인할 수 없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통념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미국에서 법대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듣고 배운 Dr. B의 판례. 웬지 Mrs. B의 삶이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전형적인 인내의 삶과 현신, 또 아픔이 아니었던가 싶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가정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몸부림이 아닌가 싶